

엘리트Ⅳ 임원배상책임보험

CHUBB®



임원배상책임보험이란 기업의 임원이 임원의 업무범위 내에서 경영판단상의 과실 및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회사, 주주 또는 제3자에게 경제적 손해를 입혔을 경우 그로 인하여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여 드리는 보험입니다.

피보험대상

- 과거, 현재, 미래의 이사 및 임원
- 경영 및 감독의 지위에 있는 직원
- 퇴임한 임원(자격 미달로 인한 비자발적 은퇴 제외)
- 사망한 이사 및 임원의 법적 또는 사실상 배우자, 자산 관리인 및 법적 대리인
- 파산 등으로 인한 정상 생활 불능상태일 때 이사 및 임원의 법적 대리인
- 회사가 발행한 상장내역서 또는 투자설명서 상의 이사 취임 예정자
- 회사에 고용된 사내변호사
- 회사의 직원 복지를 위해 설립된 연금, 은퇴 준비기금의 수탁자
- 고용관련 부당행위에 대하여 모든 종업원
- 임원과 공동 피고인으로 피소된 종업원

보상하는 행위의 범위

- 실제 또는 주장되는 배임, 오류, 부작위, 허위 진술, 오도하는 진술, 명예훼손, 직무 태만 또는 업무상 배임 또는 한국 상법 위반, 2002년 사베인스 옥슬리법 또는 다른 국가의 이에 상응하는 법, 규칙 또는 규정 위반
- 내부고발자 이슈를 포함한 고용관련 부당행위

주요 보상하는 손해

- 손해배상금, 선고액, 판결금
- 민·형사상 발생하는 변호사 수임료 등의 방어비용
- 임원에 대한 공식 조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변호사 선임비용
- 위기비용, 홍보비용 및 평판보호비용 등 긴급비용
- 임원의 자격정지 명령 등의 상황을 무효화하기 위한 법률비용(기소비용)
- 보석보증비용, 자산몰수비용, 회사의 파산으로 인한 개인의 세금 체납액 등
- 범죄인도절차와 관련 발생한 비용

상품의 특징 및 추가 보상하는 손해

- 피보험자의 범위 및 보상하는 손해의 확대
- 공식 조사관련 법률비용 및 긴급비용에 대하여 피치 못할 경우 비용발생시 30일 내에 보험사의 동의 하에 비용 선지급
- 업무상 건강 및 안전관련 손해: 과실치사, 불법행위에 의한 살인, 중대과실에 의한 살인, 또는 산업안전법, 유사한 법률위반을 주장하는 손해배상청구 또는 조사로 인한 법률 방어비용 담보
- 신규 자회사 추가: 신생 혹은 인수된 자회사에 대하여 자동확장 담보로 제공 (단, 보험조건에 따라 설정된 인수자산 기준에 따름)
- 퇴직 임원에 대한 배상: 해당 보험증권이 갱신되지 않거나 대체되지 않은 경우, 보험기간 중에 자발적으로 퇴임한 임원에 대하여 증권의 보험기간 포함 10년 내의 런오프(run-off) 담보를 제공
- 외부법인 이사 확장 담보: 회사의 요청에 따라 외부법인의 이사, 임원, 관리자 등의 지위에 있는 피보험자에게도 본 보험 담보를 제공

손해배상청구 (Claim)란?

- 서면 청구 민사상 또는 중재 절차 및 형사상 기소
- 행정상 또는 규제 절차
- 범죄인인도절차

처브그룹 소개

처브그룹은 세계 보험업계를 선도하는 보험사입니다. 전세계 54개국에서 재물보험, 특종보험, 개인상해보험, 건강보험, 재보험 및 생명보험을 다양한 기업 및 개인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언더라이팅 중심 기업인 처브그룹은 보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원칙을 바탕으로 리스크를 평가 및 관리하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보험금을 처리, 지급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보험 전문지식과 장인정신으로 처브그룹은 개인, 가족, 중소기업 및 대기업 등 다양한 고객층에게 최상의 보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처브그룹은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 광범위한 판매 채널, 탁월한 재무 건전성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자랑합니다. 처브그룹은 다국적 기업 및 중소기업 고객을 위한 재물보험, 특종 보험, 리스크 관리 서비스, 고액자산보유 고객을 위한 자산보호 목적의 보장성보험, 개인 고객을 위한 생명보험, 상해보험, 건강보험, 주택종합보험 및 특화보험 그리고 단체상해 보험, 단체생명보험 및 재보험 상품을 제공합니다.

미화 1,957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미화 468억 달러의 총 수입 보험료를 달성한 처브그룹의 주요 보험 계열사들은 스탠다드 앤 푸어스사의 기업재무 능력 AA 등급을, AM Best의 A++ 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처브그룹의 모기업인 처브리미티드(Chubb Limited)는 뉴욕증권거래소(NYSE: CB)에 상장되어 있으며, S&P 500 지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처브그룹은 취리히, 뉴욕, 런던, 파리 및 기타 주요 도시에 사업본부가 있으며, 전 세계 약 34,000명 이상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Contact Us

라이나손해보험
(에이스아메리칸화재상해보험주식회사),
처브그룹 컴퍼니
03156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48
라이나타워 14, 15층
대표번호: +82 2 2127 2400
대표팩스: +82 2 6913 8498
www.chubb.com/kr

라이나손해보험은 처브그룹 컴퍼니인
에이스아메리칸화재상해보험의 브랜드명으로,
라이나생명과 독립된 계열회사입니다.

금융보험부
Financial Lines
Property & Casualty Division
EFinLines.KR@chubb.com

Chubb. Insured.SM

알아두실 사항

보험가입에 따른 권리와 의무

계약전알릴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계약후알릴의무 및 위반에 따른 불이익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아래의 사항을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시]

1. 보험목적물을 양도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경우
2. 기타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예: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15일 이상 수선,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업하는 경우 등)

회사는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손해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청약 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 사항을 반드시 확인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험계약 청약 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내용(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의 철회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동법 감독규정 제3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 소비자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 소비자를 말합니다.

[전문금융소비자]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 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 감수 능력이 있는 금융 소비자로서, 구체적인 범위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계약의 취소

보험계약자는 청약 시 약관과 청약서 부분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계약취소 신청 주소: (03156)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48 라이나타워 14.15층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전화: 02-2127-2400)
- 가까운 영업점 위치: (03156)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48 라이나타워 14.15층
(고객서비스센터)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전화: 02-2127-2400)

보험금 지급 사유의 통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여드리지 않습니다.

보험금의 지급 및 지급제한

보험금의 지급

보험자는 지급보험이 결정되면 지체없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는 보험자가 손해를 통지 받고 보상할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해당 상황 하에서 지급할 수 있는 최저액을 가지급 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상책임이 확정되지 않거나 피보험자의 관리영역 내에 있는 사유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는 기간 동안은 보험금 지급을 중지합니다.

- A. 보험자에게 필요한 증빙이 제출되지 않음으로써 피보험자의 보상 청구권에 의문이 있는 경우
- B. 사고와 관련하여 경찰의 조사 또는 형법에 의한 심문이 완결되지 않은 상태로 진행 중인 경우

보험금의 지급 제한

약관에서 정한 보상하지 않는 손해 및 일반 면책 사항(이 일반 면책은 증권 전 부분에 적용됩니다.) 피보험자 또는 그 대리인의 고의적 행위나 고의적 태만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의 해제 · 해지에 관한 사항 (해지환급금 안내)

계약의 해지 사항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 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3. 계약자,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4.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미이행한 경우

계약의 해제 사항

계약자는 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 성립 후 2개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상법 제650조 제항).

보험계약이 효력 상실, 해지 또는 소멸된 때에는 아래와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리나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사실이 있으면 어떠한 경우에도 보험료는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한 경우: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해지환급금이 적거나 없는 이유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 시 보험기간 중 납은 미경과 기간에 대해 단기요율을 적용하여 해지환급금을 돌려드리므로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으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보험 상담 및 분쟁의 해결 안내

보험에 관한 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먼저 당사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에 의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 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회사 전화번호: 1566-5800 (고객서비스센터)
인터넷 주소: www.chubb.com/kr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
(www.fss.or.kr/국민없이1332/)
우: 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계약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 사항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 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면책기간 재적용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계약자는 보험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적합성 원칙) 제3항, 제18조(적정성 원칙) 제2항, 제19조(설명의무) 제1항 및 제3항, 제20조(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제1항 또는 제21조(부당권유행위)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법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8조 및 동법 감독 규정 제3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 체결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 체결에 대한 회사의 위반 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자는 해지요구에 위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사에 해지를 요구하신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포함하여 통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 따라 가입 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 상품에 대해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